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1.>

(적색)

정 비 명 령 서

제 호 No.

운전자	성 명		면허증	[ ] 제1종	[ ] 대형 [ ] 보통 [ ] 소형 [ ] 특수
				[ ] 제2종	[ ] 보통 [ ] 소형 [ ] 원자 [ ] 건설기계
차 량	( )시 ( )도 [ ] 사업용 [ ] 비사업용 [ ] 관 [ ] 자 제 호		차 종		
			사용주		
교부일시			교부장소		

위의 차량은 「도로교통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정비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(경찰서장)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경찰서 계급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유 의 사 항

1.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라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게 됩니다.
2.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같은 법 제153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.
3. 정비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정비 불량사항

[ ] 제동장치 [ ] 조향장치 [ ] 주행장치 [ ] 조명 [ ] 매연 [ ] 도장
[ ] 머플러 [ ] 기타 ( )

위 사실을 인정함

년 월 일

운전자 (서명 또는 인)

검인 (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(적색) 80g/㎡]